

# 예 산 총 칙

2010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   | 267,862,860 | 8,035,886 |
| 일반회계             | 239,794,402 | 7,193,832 |
| 특별회계             | 28,068,458  | 842,054   |
|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  | 13,228,433  | 396,853   |
|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     | 13,228,433  | 396,853 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| 14,840,025  | 445,201   |
| 수질개선 특별회계        | 7,072,037   | 212,161   |
| 주택사업 특별회계        | 2,960,699   | 88,821    |
|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   | 708,016     | 21,240    |
|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   | 1,199,339   | 35,980    |
|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| 1,182,377   | 35,471    |
|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      | 1,102,214   | 33,066    |
|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 | 565,679     | 16,970    |
| 기반시설 특별회계        | 29,614      | 888      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   | 20,050      | 602   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27,038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가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성립된 것으로 간주처리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채무상환원리금,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